

**미성년자들에게 친구가족의 비극적 사망 사실을 알려주고
그 반응을 취재한 TV 리포터 행위는
언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한 난폭한 행동이다**

KOVN-TV INC. v. SACRAMENTO COUNTY SUPERIOR COURT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No. C018015, 1995년 1월)

사건개요

1. 1993년 9월 3일 이 사건의 미성년 원고들인 Jennifer, Amanda, Mandy의 이웃에 살던 Debbie Weber는 자신의 3살, 6살 난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살해된 아이들은 원고들의 친구였다. 당시 Jennifer는 11살, Amanda는 7살, Mandy는 5살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그 날 늦게 Mandy네 집에 모여 있었다. 이 때 KOVN-TV의 리포터인 이 사건의 피고 Mark Saxenmeyer(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카메라맨을 데리고 Mandy의 집에 나타났다. 그들은 문 바로 뒤에 모여 서 있는 위 원고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하면서 Weber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피고는 이들 미성년자들의 부모 내지는 어른이 그 당시에 집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는 이곳이 Mandy네 집이고, Jennifer가 동생 Amanda를 데리고 Mandy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위 원고들은 이웃에 사는 Weber네 아이들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통하여 Weber네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고, 이들은 언제나 같이 노는 사이라는 것. 그리고 원고들이 Weber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고나서, 피고가 「그런데 그 아이들 엄마가 자식들을 죽이고 자살했다」라고 말하자, Amanda가 「세상에」라고 비명을 질렀다. 피고는 그들에게 혹시 Weber네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Weber네 식구들에 대해 몇 가지 더 묻고 나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끝냈다.

2. 그러자 어머니 Kim Mehrkens를 법정대리인으로 한 Amanda(Mandy) Mehrkens와 아버지 John Whittle을 법정대리인으로 한 Jennifer와 Whittle 부부, Kim Mehrkens가 원고로서 방송사인 KOLT-TV와 리포터인 Mark Saxenmeyer를 공동피고로 명예훼손 또는 고의로 정서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3. 소장에는 4가지 청구원인이 열거되어 있다. 피고들이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1) 고의로 (2) 또는 과실로 정서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3)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4) 원고들의 부모들에게도 같은 정서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것이 청구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 (3), (4)번째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1)의 청구원인만이 판단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들은 다시 (1)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인터뷰,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Weber가족의 비극적인 사망사실을 알려준 것이 고의로 정서적 고통을 가했다고 믿을만한, 도가 지나친 난폭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야식판결을 구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들을 인터뷰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원고들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거나, 그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웃의 비극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1심 법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1심 법원이 약식 판결 신청을 거부한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항소심에 구하였다 이에 2심 법원은 이를 심리하기 전에 일단 보전절차로서 1심에서의 본안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켰다.

판결요지

1. 피고들이 구하는 약식판결을 내리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취재활동이 도가 지나친 난폭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취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서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피고가 알았다거나,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지 않음이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사실관계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취재활동이 상처받기 쉬운 나이의 미성년자들이 있는 사적 주거에 승낙도 받지 않고 침입하여 이루어졌으며, 어린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당연히 예상되는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인위적으로 뉴스거리화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현저하게 결하여 결국 도가 지나친 난폭한 행동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3. 이처럼 요건사실에 관하여 아직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어서 심리를 더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피고들의 약식청구기각판결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보전처분으로서 내린 1심 절차의 중지명령을 취소한다.

판결이유(요약)

1. 피고들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피고가 그 취재활동으로 미성년 원고들에게 고의로 정서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원, 피고들간의 다툼이 있다. 즉 원고들은 피고가 이들 미성년자들이 Weber 네 아이들과 같이 노는 친구들이고 그들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미성년 원고들에게 Weber 가족의 비극적인 사망사실을 알려준 것이 정서적 고통을 가했다고 믿을만한 극단적이며 난폭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원고들에게 이웃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은 원고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거나, 놀라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들의 행동이 도가 지나친 난폭한 행동이었는지의 여부는 재판에서 좀더 심리하여야 할 사안이며 피고들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면, 아직 더 심리를 해야 할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약식의 청구기각판결은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심리할 사항이 더 남아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뿐 아니라 이들 증거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추론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즉 약식의 청구기각판결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추론이 다른 증거 및 그로부터 도출된

추론과 모순되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고의로 정서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1) 정서적인 고통을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고통이야기 될 가능성을 부주의하게 무시한 피고의 도가 지나친 난폭한 행동이 있을 것 (2) 원고가 극심한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것 (3)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없음이 명백하다면 피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1)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도가 지나친 난폭한 행동이란 문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행동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평균적인 사회 구성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적의를 내보이며, 극악하다고 소리칠만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판정할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 법원은 위 비디오테이프를 살펴본 결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미성년 원고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용어를 구사했다는 점, 그리고 Weber 살해사건과 관계된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테이프의 화면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피고가 문을 두드리자 세 명의 미성년 원고들이 모두 문 앞으로 나왔고, 이어서 비디오 촬영을 위한 조명이 아이들의 얼굴에 비추어졌다. 낯선 어른이 마이크를 손에 들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방충망 문을 열어 아이들과 카메라 사이에 있던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했다. 5 살, 7 살, 11 살인 미성년자들은 아주 예민한 아이였다. 집안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고, 이들이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거나, 그곳에 나타난 낯선 사람에게 아무런 통제도 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리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비디오로 촬영되고 텔레비전에 공공연히 방영되어도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할 여지가 주어진 것 같지 않았다. 비디오 테이프는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이 공공장소가 아닌 그들의 집에서 낯선 어른에게 침입 당한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앞으로 배심원은 피고의 취재활동이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완전히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비디오테이프는 피고가 미성년자들이 Weber 네 아이들과 항상 같이 놀았던 사이이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인터뷰를 시작한 후에 피고가 아이들에게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상황들을 설명해 줄 필요를 느꼈을 수도 있다. 또한 피고가 어른들이라면 쉽게 듣고 넘길 수 있는 소식을 어린이들이 들었을 때 야기될 충격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올바른 판단 없이 행한 행동이 반드시 극단적이고 극악한 행동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동에는 경솔한 면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는 단순히 뉴스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으로 뉴스를 만들려고 했다고 추론할 여지도 남아있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뉴스를 수집하고자 했더라도, 미성년 원고들이 Weber 네 아이들과 친구 사이이면서도 이들의 죽음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뉴스거리가 될만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친구들의 엄마가 그 친구들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따라서 언론의 이익을 위해 어린 아이들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종하려 한 TV 리포터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난폭한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추론은 피고들이 위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고 하겠다.

4. 만약 피고의 행동이 도가 지나친 난폭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피고의 행동이 불법행위로 완성되기 위하여 남은 것은 피고들의 고의와 과실의 존재 여부인데 위의 비디오 테이프가 피고의 적극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피고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으며 그들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려 거나, 놀라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이 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437c(e)항은 「만약 개인의 심리상태가 중요한 법률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 사실관계가 개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식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고의, 과실은 행위자가 불순하고 사악한 의도를 가질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충분하며 12 세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피고의 위 취재활동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연방헌법 수정 1 조상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이 단지 진실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며 여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사실 관제에서 추정되는 불법행위는 합법적인 취재행위나 진실한 정보의 제공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기자가 일반적인 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도 갖고있지 않다. 수정 1 조는 언론이나 그 종사자가 그들의 뉴스 취재활동이 보도할만한 내용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인 범죄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피고가 KOVR-TV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미성년자들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라면, 이는 대중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뉴스취재 활동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순수한 아이들을 도구로 이용한 파렴치한 행동일 뿐이다. 언론기관 종사원에게 기본적인 예절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도록 요구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6. 따라서 피고들이 낸 약식판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1 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고, 당 법원이 보전조치로서 1 심 법원의 본안 심리를 중지시키기 위해 발한 명령을 취소한다.